

제256회 임시회
'07. 1. 29.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 폐지조례안



건설문화위원회

심 사 보 고 서

2007. 1. 29.
건설문화위원회

1. 심사 경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7년 1월 15일

○ 회부일자 : 2007년 1월 17일

상정일자 : 제2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○ 2007. 1. 26 : 제2차 건설문화위원회의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
심사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문화관광환경국장 신 동 인)

제안 이유

○ 향토음식에 대한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제정 하였으나 '95년 1차 지정 후 신청자가 없어 추가 지정과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, 시군별로 고장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을 선정하여 육성하는 한편, 대물림 전통음식 계승업소 인증, 모범업소지정 등을 추진하고 있어 지정의 실효성이 미미하므로 폐지하려는 것임

주요 내용

-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 폐지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문화전문위원 유인종)

- 향토 음식에 대한 관광상품화를 위하여 시군별로 현재 지역 고유의 향토 음식 발굴 및 계승발전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향토음식기능보유자를 따로 지정 관리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됨으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 사료됨.

다만, 본 조례의 폐지로 이후 발생하는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생략

6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(조례 제2138호, 1994. 7. 22)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【지방자치법】

제15조 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16조 (규칙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